

# 서 울 특 별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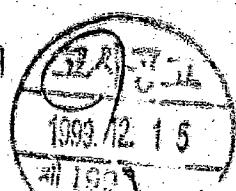
우편번호100-744 서울시 종구 태평里1가 31번지 / 전화(02)3707-9793/4 / 전송 3707-0809  
처리부서 : 주차계획과(서소문빌관 제1동 2층) 과장 팀혁소, 팀장 신만철

문서번호 주차91110-1976

시행일자 1999.12.15

(경유)

수신 내부전재



참조

제목 훈련원공원 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(용도변경)와 관련한 사업기간 변경  
인가

1. 쌍건 제616-1087('99.12.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·운영중인 훈련원공원 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관련으로 사업시행자인 쌍용건설(주)로 사업기간 연장 승인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변경인가를 하고,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## 가. 사업개요

○ 사업명 : 훈련원공원 주차장 건설

○ 위치 : 종구 을지로5가 40-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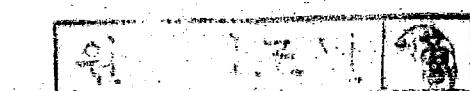
○ 시설규모 : 지하5층 924대(부대시설 용도변경 16,852.91㎡)

## 나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사업기간	'99. 9. 15~'99.12.15	'99.12.15~2000. 2.15

## ○ 변경사유

주차장시설물에 대한 자체 방재전문기관의 별도 방재진단을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시 추가로 반영하고자 추진중인 바, 방재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



#### 다. 인가조건

방재전문기관의 방재진단 결과에 따라 주차시설물을 보완하고 준공검사시 결과보고 할 것 끝.

(제 2 안)

수 신 : 송파구 신천동 7-23 쌍용건설(주) 대표이사 사장 장통립 귀하

제 목 :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인가

1. 쌍건 제616-1087('99.12.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사가 우리 시에 신청한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요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인가를 하니 주차장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사업기간	'99. 9. 15~'99.12.15	'99.12.15~2000. 2.15

(제3안)

수 신 중구청장

참 조 건축, 교통지도과장

제 목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인가 통보

1. 쌍건 제616-1087('99.12.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중인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기간·변경인가하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사업기간	'99. 9. 15~'99.12.15	'99.12.15~2000. 2.15

# 서 울 특 별 시 장

(제3안)

수신 홍보담당관

제목 시보개재의회

아래와 같이 시보개재를 의뢰하오니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재구분 :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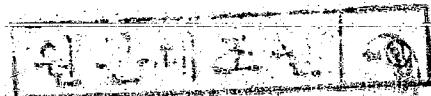
나. 개재건명 :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

라. 개재회망일 : 1999. 12.

파로불임 : 고시문 2부, 증

## 주 차 계획 과장

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호

제작일자	1999.12.14	제작번호	9902
담당과	토지주택부과	별무관	별무관
99.12.14	99.12.14	99.12.14	99.12.14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296호('99.9.20)로 토시계획사업(주차장) 시행허가된 혼련원공원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시 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9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### 가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사업기간	'99.9.15~'99.12.15	'99.12.15~2000.2.15

- 나. 기타 사업대상지의 위치,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, 수용 또는 사용 토지명세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권리인의 주소·성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.
- 다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(전화 : 3707-979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